

제 호

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

기관의 명칭:

소재지:

교육실시기관장:

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
위와 같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직인

변경 및 처분사항 등

연 월 일

내 용